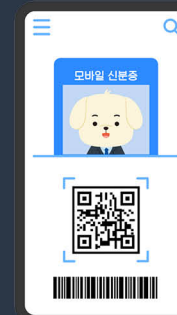




2024 하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



01 간이수출신고 허용 기준금액 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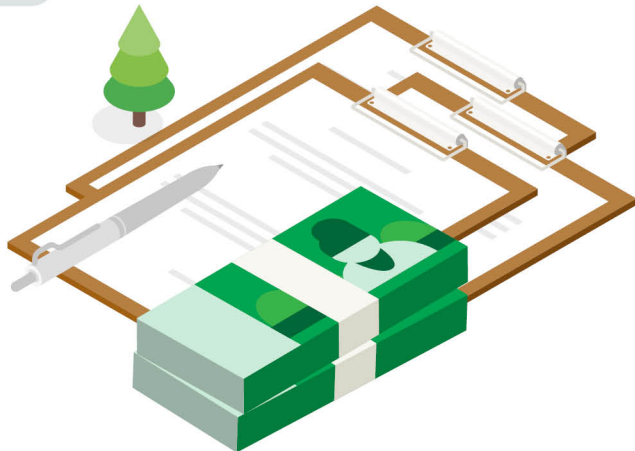
종 전

- 간이수출신고 허용 기준금액(제35조의2)
 - 수출가격 200만원(FOB 기준) 이하

달라지는 내용

- 간이수출신고 허용 기준금액 상향
 - 수출가격 400만원(FOB 기준) 이하

개정전



K사는 200만원을 초과하는 수출 건에 대해 200만원 단위로 간이수출신고를 하거나 일반수출신고를 함으로써 수출업무 부담

개정후



K사는 간이수출신고 허용 기준금액 상향으로 전자상거래 물품 대부분을 간이수출신고를 통해 수출할 수 있게 되어, 수출신고 업무 부담 해소 및 전자상거래 수출 활성화 기대

기대효과 고가의 전기·전자기기 등을 포함한 전자상거래물품 대부분이 간이수출신고가 가능하여 전자상거래 수출 활성화 기대

시행일 '24. 8. 1. 시행 예정(「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개정)

02 복수 수출자의 간이수출신고 물품 동시포장 허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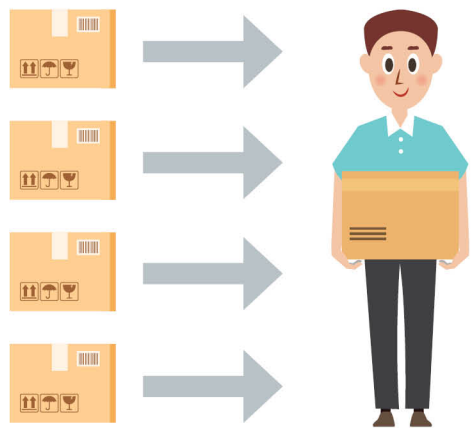
종 전

- 동시포장 물품의 적재(제51조)
 - <신설>

달라지는 내용

- 복수 수출자의 간이수출신고물품에 대한 동시포장 허용
 - 2인 이상의 수출자는 동일한 구매자에게 수출되는 전자상거래 물품이 제3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간이수출신고된 경우, 2건 이상으로 수출신고 수리된 물품을 1건으로 동시 재포장하여 적재할 수 있는 근거 신설

개정전



동일한 해외 구매자가 주문한 물품임에도 수출자가 다른 경우 동시포장을 할 수 없어, 수출신고건별로 개별 포장하여 발송해야 함으로써 배송 불편 및 물류비용 부담

개정후



해외 구매자가 동일한 경우 간이수출신고(제35조의2제1항제2호) 건은 동시포장하여 배송할 수 있게 됨으로써 배송 편의 제고 및 물류비용 절감

기대효과 복수 수출자의 간이수출신고 물품 '동시포장' 허용으로 물류비 절감 및 전자상거래 수출 활성화 기대

시행일 '24. 8. 1. 시행 예정(「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개정)

03 자유무역지역 내 사용소비신고 허용기준 확대

종 전

□ 사용소비신고* 대상(제7조의2)

* 관세 등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로 수입화물의
포장을 해체하여 분할·병합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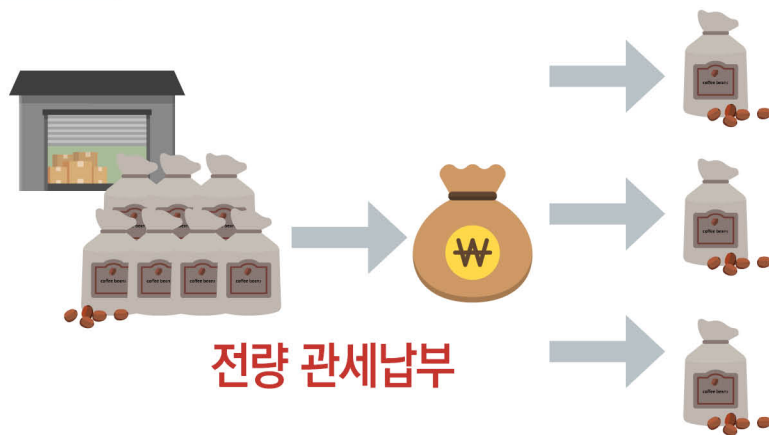
- 수량단위 화물관리 가능 물품
- <신설>

달라지는 내용

□ 대상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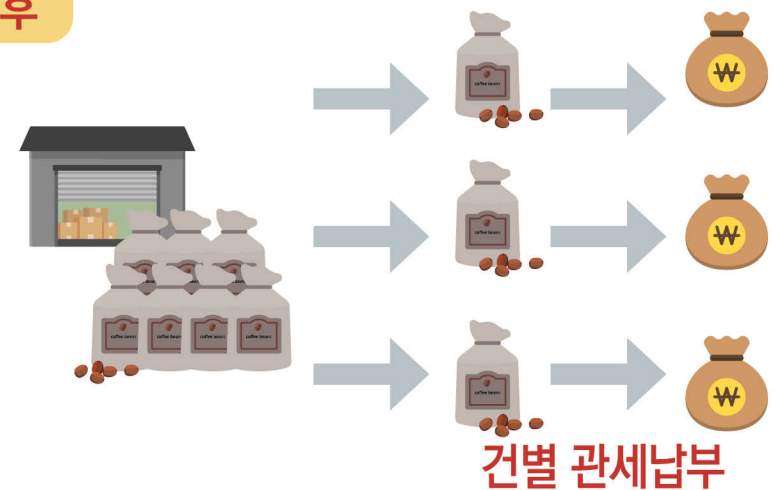
- <현행과 같음>
- 중량단위 화물관리 가능 물품

개정전



A사는 커피 원두를 수입하여 부산신항
인근 창고에 반입한 이후 전량 수입통관을 거쳐
관세를 납부한 이후에, 소분작업을 거쳐
전국 대리점 및 물류센터 등으로 배송하고 있었음

개정후



A사는 부산신항 자유무역지역 내 창고에 반입한
수입 커피 원두에 대해 관세를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중량단위로 재고관리를 하면서
매 반출건별 수입신고를 할 수 있게 되어
관세납부 자금부담이 완화됨

기대효과 자유무역지역내 수입화물 복합물류 활성화로 외국인 등 투자 유치 및 신규 부가가치 창출

시행일 '24. 9월 시행 예정(「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 제7조의2 개정)

04 유통이력 신고기한 연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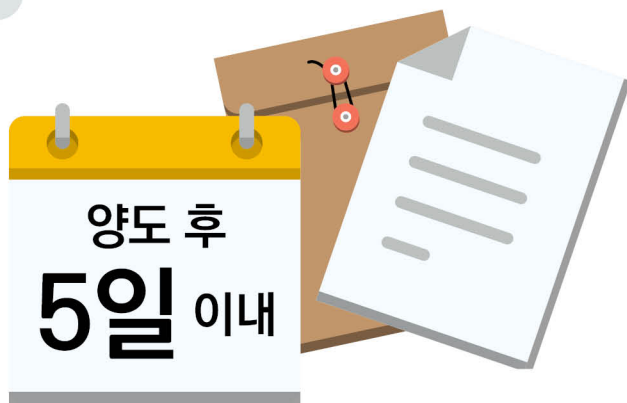
종 전

- 유통이력 신고 기한 연장
• 〈신설〉

달라지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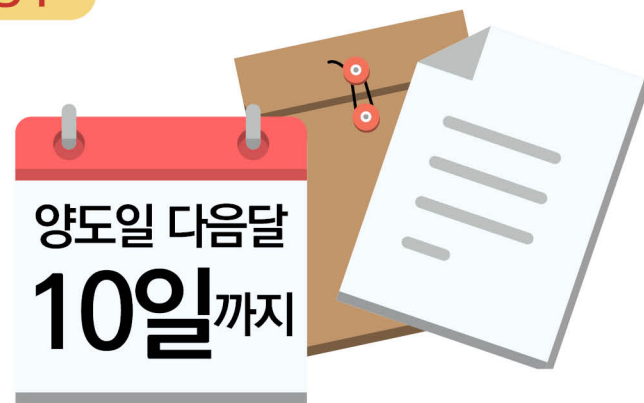
- 부가가치세법 제34조제3항제1호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유통이력신고물품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사회안전,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관세청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전



‘L’사는 유통이력 신고물품 양도 후 5일 이내에 「수입물품유통이력신고시스템」에 접속하여 판매내역 등을 신고

개정후



‘L’사가 달의 1일부터 말일까지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해당 달의 말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유통이력 일괄 신고 가능

기대효과 유통이력 신고 기한 연장을 통해 유통이력신고의무에 대한 기업 부담 완화

시행일 '24. 9. 1. 시행 예정(「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

05 과세정보 전송 요구권 신설에 따른 제반절차 마련

종 전

- <신설>
- <신설>
- <신설>

달라지는 내용

- 과세정보 전송대상 신설(제38조)
 - 관세법 시행령 제141조의13제1항제2호에 따라 과세정보 전송대상으로 전기통신사업자*를 규정
 - *현재는 해당자가 없어, 향후 희망자가 있는 경우 적격 여부를 검토하여 등재 예정
- 과세정보 전송 요구에 대한 처리방법 신설(제40조)
 - 통계교부대행자는 과세정보의 전송·철회 요구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이행
 - 통계교부대행자는 과세정보 전송대상, 항목 등을 사전협의 후 플랫폼에 반영
- 전송요구 거절 사유 판단 시 협의 의무 신설(제41조)
 - 통계교부대행자의 전송요구 거절 사유 판단 등에 의문이 있을 시 관세청장과 협의 필요

개정전

S사는 「무역My데이터플랫폼」에 직접 접속하여 내려받은 잠정가격 신고자료를 A관세사에게 전달, A관세사는 기한 내에 확정가격신고 이행

개정후

S사는 「무역My데이터플랫폼」에 접속하여 자사의 잠정가격 신고자료를 1년 주기로 A관세사에게 전송해 줄 것을 요구, A관세사는 전송받은 S사의 잠정가격 신고자료를 이용해 곧바로 확정가격신고 이행



기대효과 과세정보 전송 요구권과 관련한 세부절차 마련으로 민간 기업의 안정적인 마이데이터 플랫폼 활용을 지원

시행일 '24. 7. 1. 시행(「무역통계 작성·교부 및 과세정보 제공에 관한 고시」개정)

06 지정면세점 디지털 신원확인 방식 확대

종 전

□ 면세물품 판매(제15조)

- 지정면세점은 면세물품 판매 시 구매자의 신분증 및 탑승권 확인
- <신설>

달라지는 내용

□ 구매자의 신원확인 방법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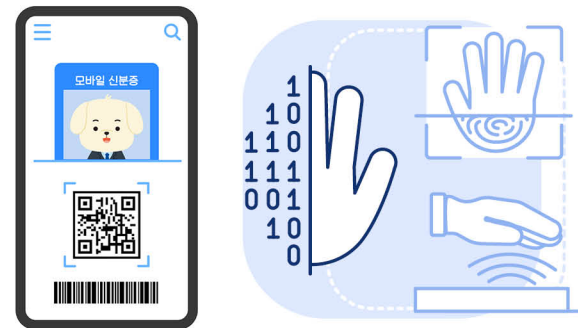
- <현행과 같음>
- 디지털 신원인증 방식 등
세관장이 인정하는 신원확인 방법 추가

개정전



여행자 A씨는 지정면세점에서
탑승권, 신분증을 제시하여
신분확인 절차를 거친 후, 면세물품을 구매

개정후



여행자 A씨는 지정면세점 면세물품 구매 시
바이오 인증(손바닥정맥)으로 신원 증명이 가능해져
탑승권, 신분증을 챙겨야하는 수고를 덜게 됨

기대효과 지정면세점을 이용하는 국민 편의 제고 및 면세산업 활성화

시행일 '24. 8월 시행 예정(「제주국제자유도시 지정면세점 운영에 관한 고시」 제15조 제1항 개정)

07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 신청 방법 개선

종 전

- 과세가격 결정방법(일반·특수)의 사전심사 신청
 - 우편, 방문 등 신청

달라지는 내용

- 신청 방법 개선
 - (원칙)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을 통해 신청

개정전



수입물품에 대한 과세가격 결정에 관하여
의문이 있는 경우 A사는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신청서(일반용)와 첨부서류를
관세평가분류원에 우편으로 신청

개정후



수입물품에 대한 과세가격 결정에 관하여
의문이 있는 경우 A사는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을 통해
관련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전산으로 신청

기대효과 납세자의 편의성·접근성 향상에 기여

시행일 '24. 8월 시행 예정(「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개정)

08 해외직구 구매대행업자 등록 시기 명확화

종 전

- 등록대상 및 요건(제3조)
 - 직전 연도 구매대행 한 수입물품의 총 물품가격이 10억원 이상인 구매대행업자는 세관장에게 등록
- <신설>

달라지는 내용

- 등록시기 명확화
 - 직전 연도 구매대행 한 수입물품의 총 물품가격이 10억원 이상인 구매대행업자는 세관장에게 다음해 3월말까지 등록
- 등록대상 구매대행업자 등록이행 사전 안내(제3조의2)
 - 등록기한 2개월 전에 등록이행 사전 안내

개정전



등록 대상인 A 구매대행업자는 등록시기·기한을 정확하게 알지 못해 미등록으로 인한 불이익 발생을 걱정하는 상황 발생

개정후



A 구매대행업자는 등록 대상 사전안내문을 받고 다음해 3월까지 등록 신청 완료 및 등록 의무에 대한 부담이 경감됨

기대효과 미등록으로 인한 불이익 사전 예방 및 업체 등록 부담 경감

시행일 '24. 7. 1. 시행(「구매대행업자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개정)

09 관세정보시스템 운영 전담 특수법인 설립

종 전

- 운영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사항 (제13조 및 제15조~제20조)
- 운영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제21조)
 - 운영사업자에 대한 감독 권한

달라지는 내용

- <삭제>
- 관세정보원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 마련
 - 관세정보원에 대한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거나 필요한 경우 자료제출 요청 권한 추가

개정전



민간업체 위탁

관세청은 자격 요건을 갖춘 민간업체 A사를 관세정보시스템 '운영사업자'로 지정하여 운영 또는 유지보수 사업을 위탁

개정후



특수법인 설립

특수법인 『한국관세정보원』을 설립하여, 해당 기관이 관세정보시스템에 대한 운영·유지보수를 전담하도록 함

기대효과 관세정보시스템에 운영 전담 특수법인 『한국관세정보원』의 설립으로 관세정보시스템 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 제고

시행일 '24. 8월 시행 예정(「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고시」개정)

10

해외직구 통관 시 개인통관고유부호 검증강화



종 전

□ 부호검증 체계

- 부호·성명 또는 전화번호 일치 시 통관 가능

달라지는 내용

□ 부호검증 체계 강화

-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시 작성했던 발급정보 (성명+전화번호)와 신고서 등에 기재한 개인통관고유부호 +성명+전화번호가 모두 일치하는 경우에만 통관 가능

개정전



부호·성명 또는 전화번호 일치

오픈마켓 직구 플랫폼에 입점한 구매대행업자는 과거에 구매대행을 요청했던 소비자의 **개인통관고유부호와 이름을 수집 후**, 구매대행업자 전화번호를 사용해 자가사용 물품으로 위장하여 부정 수입함

개정후



모두 일치

오픈마켓 직구 플랫폼에 입점한 구매대행업자는 과거에 구매대행을 요청했던 소비자의 **개인통관고유부호와 이름을 수집 후**, 구매대행업자 전화번호를 사용해 자가사용 물품으로 위장하여 부정 수입을 시도하였으나, **부호·이름·전화번호가 발급 정보와 모두 일치하지 않아 통관 불가**

기대효과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을 통한 불법행위 사전 차단 및 개인 통관 정보 보호 강화

시행일 '24. 8. 29. 시행 예정